

## “과기처산하에 「종합정보센터」 설치를”

###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, 노대통령에 건의

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10.29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주재로 개최한 제21차 회의에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대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. 동 회의의 건의내용을 보면 크게 세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.

이를 보면 「과학기술정보의 종합적인 관리·지원대책」, 「기술발전을 위한 산·학·연의 협력방안」과 「국가연구개발활동의 생산성 제고방안」이다.

이를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.

#### 과학기술정보의 관리·지원대책

과학기술정보가 곧 국력으로 작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의 수집, 분석, 가공 및 유통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 지원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.

과학기술정보의 종합적 관리·지원대책으로는 ▲「종합적인 과학기술정보센터」를 과학기술처 산하에 설치하고 ▲첨단 과학기술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「해외연구소」의 설치·확대·국내외 과학기술 정보기관의 정보수집망의 구축 등을 유도·지원하여 ▲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종합조정과 지원대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정부차원의 「기술정보심의회」를 설치하고 ▲과학기술 정보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「기술정보유통촉진법」을 제정하고 ▲이같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산업기술정보원, 전문연구기관의 기술정보실, 시스템공학연구소 등 관련기관의 재정 및 인력을 대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.

#### 기술발전 위한 산·학·연의 협력방안

최근 기술보호주의의 확산에 따라 고급기술의 도입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기술료 지급은 최근에 급격히 상승(88년 건당 90만불→ 91년 건당 200만불)하여 제품가격증 기술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. 그러나,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개발력 부족으로 기업단독으로 첨단 핵심기술을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연구체제 구축이 절실히다.

산·학·연 협력체제의 구축에 있어 산업체·연구계·학계 및 정부는 자구노력 또는 공동협력보다는 각계 입장만을 강조하며, 외부로부터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으려 하고 있어 기업·대학·연구기관 등 각 주체들이 공동목표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여건의 조성이 요망된다.

#### 산·학·연 협력연구의 촉진대책

▲국무총리실에 산·학·연 협력연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고, 실무「전담기구」를 설치한다. ▲대학과 특정연구기관은 산업체와의 협력연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「산업기술지원센터」를 설치·운영하며 ▲산업계는 필요에 따라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인적교류와 연구자금지원을 확대하는 한편, 산·학·연 협력을 위한 업종별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공동 연구과제를 도출하도록 한다. ▲이와 함께 정부는 대학교수 및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에 파견하여 연구활동

을 허용하는 한편 경쟁적 연구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복 연구지원을 일부 허용토록 한다는 것이다.

#### 연구개발활동의 생산성 제고방안

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연구개발력의 향상과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가 시급하므로 기업·대학·연구기관 등 연구단체의 특별한 노력과 집념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확고한 국가적 의지가 연구개발철학을 바탕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. 따라서 국가 과학기술발전체계의 구축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,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과학기술 발전모형의 정책기조를 모색해야 한다. 이를 위해 「사람」「제도」「운영」 등 연구개발활동의 주요 생산성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 정책대안의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#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생산성을 제고

▲연구원들이 신명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유지하여, 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연구회계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대책을 마련한다. ▲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 극대화를 위해서 고유의 중추적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미래지향적 연구, 공공기술 연구, 당면한 생신기술연구를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. ▲기반기술 및 공용기술개발을 위해 연구조합체제를 활성화 한다. ▲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자주적 평가제도를 확립한다. ▲연구개발주체의 조직관리와 경영형태를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한다.